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통주택관리 지원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24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6-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25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6-63호 2007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 표준액 결정고시 27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6-64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31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3호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3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0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043호 자동차관리법위반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 4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0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1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5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2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5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2호 구금고지정 공고 5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7호 2007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명예(조기) 퇴직수당 지급시행계획 공고 5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8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6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9호 2007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7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7호 인천광역시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1

조 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6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연간 회의일수 및 회기) ①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③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769”를 “775”로 하고, 동조제1호중 “752”를 “758”로 한다.

별지를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 구 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국 | 보건소 | 보건 지소 | 출장소 | 동 |
|----------|-----|-----|---------|-----|-------|-----|-----|
| 총 계 | 775 | 488 | 17 | 42 | 18 | 37 | 173 |
| 정 무 직 계 | 1 | 1 | | | | | |
| 구 청 장 | 1 | 1 | | | | | |
| 일 반 직 계 | 680 | 428 | 11 | 38 | 18 | 33 | 152 |
| 부구청장(3급) | 1 | 1 | | | | | |
| 4 급 | 5 | 3 | 1 | 1 | | | |
| 5 급 | 42 | 17 | 2 | 4 | 1 | 1 | 17 |
| 6 급 | 140 | 92 | 3 | 6 | 3 | 8 | 28 |
| 7 급 | 193 | 126 | 2 | 8 | 5 | 12 | 40 |
| 8 급 | 205 | 141 | 2 | 10 | 6 | 9 | 37 |
| 9 급 | 94 | 48 | 1 | 9 | 3 | 3 | 30 |
| 별 정 직 계 | 2 | 2 | | | | | |
| 6 급 상 당 | 1 | 1 | | | | | |
| 7 급 상 당 | 1 | 1 | | | | | |
| 기 능 직 계 | 92 | 57 | 6 | 4 | | 4 | 21 |
| 기 능 6 급 | 2 | 2 | | | | | |
| 기 능 7 급 | 5 | 5 | | | | | |
| 기 능 8 급 | 11 | 11 | | | | | |
| 기 능 9 급 | 27 | 19 | 3 | 1 | | | 4 |
| 기 능 10 급 | 47 | 20 | 3 | 3 | | 4 | 17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우리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외국어교육특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교육특구”라 함은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우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화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 반영된 것을 말한다.
3. “수탁사업자”라 함은 제8조에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 교원 또는 강사의 배치사업
2. 영어마을(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영어학습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설립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3. 사이버 영어학습센터사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영어교육사업
5. 그 밖에 엘리트 영어교육사업 등 외국어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업.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2장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

제4조(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 ①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어교육특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의결 또는 승인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
-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④위원은 특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⑤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간사는 회의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수탁사업자의 지정 등

제8조(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서비스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원어민 교원 또는 강사에 대한 수급·관리 능력이 있는자
4. 외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외국어교육특구의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화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지정되면 수탁사업자와 특화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내용은 공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9월말까지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원조달 등) ①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구의 일반회계예산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2회(2월, 8월)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수탁사업자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 실시 후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례법」 및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 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수탁사업자의 지정,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6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에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 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 기간 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 13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 14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1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6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

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 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의2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상의 최종건설사업 준공시까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①년도 | ②기분 | ③세목 | ④과세번호 | ⑤당초 결정세액 | ⑥감면 결정세액 | ⑦차인납부세액 | ⑧납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사유 | | | | | | | |

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내의 공용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 「주택법」 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지내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조금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단지에 한하되,”를 “보조금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단지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도 종합계획에 의거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1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관계 전문가”를 “주택관리 관계 전문가□□로 하고, □□1인□□을 □□2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 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
2.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

제6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68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우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
화운동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
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제대복무군인등의 진료(다만, 국민
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규 칙 |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7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 총 사업비 | 지 원 기 준 | | 비 고 |
|---------------------|---------------------|---------------------|-----|
| | 의무관리 | 임의관리 | |
| 5백만원 이하 | 전 액 | 전 액 | |
| 5백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
|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5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2천7백5십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2백5십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고 시 |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6-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번지 일원【북향 배후부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정비과(☎ 032-560-4770)에 비치 보관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제한사유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북향 배후부지 일원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인 개발방안 수립시 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역

가. 제한지역

- 제한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번지 일원(구역도 : 별첨 게재생략)
- 제한면적 : 1,906,938㎡(약 576,849평)

나. 제한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 행위허가 및 허가대상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행위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행위

다. 제외사항

-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가설건축물 설치

- 재해위험방지 및 공익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확실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2006. 12. 27 ~ 2009. 12. 26)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결정·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6-63호

2007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I. 2007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II. 200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15,966종, 0.42% 인하)

-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7,737종, 0.16% 인상)

-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35종, 1.36%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139종, 동결)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1,162종, 0.45%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295종, 1.60%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36종, 동결)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123종, 11.49%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중별표준시설내역

자. 지하자원(158종, 0.61%인상)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1종, 21.7%인상)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

2007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내용

| 2006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 2007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
|--|--|
|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당 470,000원 | ※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심의대상 아님.(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액 사용) |
| ○ 구조지수 - 9단계(지수 : 20 ~ 120) | ○ 구조지수 ⇒(전년과 동일) - 9단계(지수 : 20 ~ 120) |
| ○ 용도지수 - 7단계(지수 : 30 ~ 135) | ○ 용도지수 ⇒ <u>신설(3종) 및 조정(1종)</u> - 8단계(지수 : 30 ~ 135) |
| ○ 위치지수 - 28단계(지수 : 80 ~ 134) | ○ 위치지수 ⇒ <u>단계축소 및 하향조정</u> - 11단계(지수 : 80 ~ 130) |
| ○ 경과년수별 잔가율 - 세부내역 생략 | ○ 경과년수별 잔가율 ⇒ (전년과 동일) |
| ○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 24단계 - 특수설비 설치 건물 : 5단계 - 고층건물 : 3단계 - 대형건물 : 1단계 - 특수건물 : 2단계 -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 1단계 - 1급 한옥 : 1단계 - 2층이상 건물의 지상 상가부분 : 11단계 나. 감산대상 : 13단계 - 단독주택 : 2단계 - 주택 차고 : 1단계 - 특수구조 건물 : 3단계 - 2층이상 건물의 지하 상가부분 : 7단계 | ○ 가감산특례 ⇒ <u>일부 하향조정(6종)</u> 가. 가산대상 : 24단계 - 특수설비 설치 건물 : 5단계 <u>·2종(자동승강기, 에어컨) 15→5(하향)</u> - 고층건물 : 3단계 <u>·3종 : 10 ~ 20 → 5 ~ 15(하향)</u> - 대형건물 : 1단계 <u>·1종 : 10 → 5(하향)</u> - 특수건물 : 2단계(동일) -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 1단계(동일) - 1급 한옥 : 1단계(동일) - 2층이상 건물의 지상 상가부분 : 11단계(동일) 나. 감산대상 : 13단계(동일) - 단독주택 : 2단계(동일) · 주택 차고 : 1단계(동일) · 특수구조 건물 : 3단계(동일) - 2층이상 건물의 지하 상가부분 : 7단계(동일) |
| ○ 증·개축 건물 - 세부내역 생략 | ○ 증·개축 건물(전년과 동일) - 세부내역 생략 |
| | ○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u>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9단계(신설)</u> |
| ○ 시가표준액 일람표 - 세부내역 생략 | ○ 시가표준액 일람표(전년과 동일) - 세부내역 생략 |

【참고 2】

2007년도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내용

| 구 분 | 종류별 | 기종 | | | | 2007 조정방법 | | | 2007 조정내역 | | | | |
|---------|----------|--------|--------|-------|-----|-----------|----------|----------|-----------|-------|-------|--------|-------|
| | | 계 | 2006 | 신규 | 삭제 | 계 | 조사 시가 | 전년 지수 | 계 | 인상 | 인하 | 동결 | 신규 |
| 계 | 총계 | 27,146 | 23,017 | 4,324 | 195 | 27,149 | 9,574 | 17,575 | 27,146 | 1,810 | 3,414 | 17,598 | 4,324 |
| 차 량 | 소계 | 15,966 | 12,533 | 3,491 | 58 | 15,966 | 6,971 | 8,995 | 15,966 | 681 | 2,799 | 8,995 | 3,491 |
| | 국산 | 13,954 | 10,658 | 3,314 | 18 | 13,954 | 5,500 | 8,454 | 13,954 | 585 | 1,601 | 8,454 | 3,314 |
| | 외산 | 2,012 | 1,875 | 177 | 40 | 2,012 | 1,471 | 541 | 2,012 | 96 | 1,198 | 541 | 177 |
| 기 계 장 비 | 소계 | 7,737 | 7,260 | 485 | 8 | 7,737 | 1,149 | 6,588 | 7,737 | 418 | 246 | 6,588 | 485 |
| | 국산 | 4,396 | 3,994 | 410 | 8 | 4,396 | 936 | 3,460 | 4,396 | 358 | 168 | 3,460 | 410 |
| | 외산 | 3,341 | 3,266 | 75 | | 3,341 | 213 | 3,128 | 3,341 | 60 | 78 | 3,128 | 75 |
| 선 박 | 소계 | 135 | 135 | | | 135 | 135 | | 135 | 108 | | 27 | |
| 항공기 | 소계 | 139 | 133 | 6 | | 139 | 6 | 133 | 139 | | | 133 | 6 |
| | 고정익 | 80 | 77 | 3 | | 80 | 3 | 77 | 80 | | | 77 | 3 |
| | 회전익 | 59 | 56 | 3 | | 59 | 3 | 56 | 59 | | | 56 | 3 |
| 시설물 | 소계 | 1,162 | 1,047 | 115 | | 1,162 | 325 | 837 | 1,162 | 193 | 17 | 837 | 115 |
| | 레저 | 257 | 252 | 5 | | 257 | 11 | 246 | 257 | 6 | | 246 | 5 |
| | 저장 | 41 | 39 | 2 | | 41 | 33 | 8 | 41 | 31 | | 8 | 2 |
| | 도크 접안 | 23 | 23 | | | 23 | 5 | 18 | 23 | 5 | | 18 | |
| | 도관 | 74 | 74 | | | 74 | 74 | | 74 | 74 | | | |
| | 급배수 | 124 | 124 | | | 124 | 19 | 105 | 124 | 19 | | 105 | |
| | 에너지 | 564 | 456 | 108 | | 564 | 148 | 416 | 564 | 23 | 17 | 416 | 108 |
| | 기타 | 79 | 79 | | | 79 | 35 | 44 | 79 | 35 | | 44 | |
| 부 수 시설물 | 소계 | 295 | 294 | 1 | | 295 | 77 | 218 | 295 | 45 | 31 | 218 | 1 |
| 입 목 | 소계 | 36 | 36 | | | 36 | | 36 | 36 | | | 36 | |
| 어업권 | 소계 | 123 | 109 | 14 | | 123 | 45 | 78 | 123 | 26 | 5 | 78 | 14 |
| 회원권 | 소계 | 1,395 | 1,314 | 210 | 129 | 1,398 | 845 | 553 | 1,395 | 331 | 304 | 550 | 210 |
| | 골프 | 523 | 421 | 121 | 19 | 526 | 413 | 113 | 523 | 215 | 77 | 110 | 121 |
| | 콘도 | 579 | 562 | 75 | 58 | 579 | 406 | 173 | 579 | 110 | 221 | 173 | 75 |
| | 체육 | 287 | 326 | 13 | 52 | 287 | 23 | 264 | 287 | 6 | 4 | 264 | 13 |
| | 승마 | 6 | 5 | 1 | | 6 | 3 | 3 | 6 | | 2 | 3 | 1 |
| 지하 자원 | 소계 | 158 | 156 | 2 | | 158 | 21 | 137 | 158 | 8 | 12 | 136 | 2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6-64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이하“광고물”이라 한다)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제1조(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제한·완화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 과쾌적인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가정택지개발지구
2. 면적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972,141㎡), 가정택지개발지구(1,330,000㎡)
3. 구역 : “별도”도면 표기 구역

제3조(일반적인 표시제한·완화 사항)

① 광고물 등의 문자 및 숫자(이하 “문자 등”이라 한다)

1.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업종 및 취급상품을 알 수 있는 외국문자와 병기할 수 있다.
2.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내용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문자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속한 내용 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② 광고물 등의 도안 등

1.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및 광고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상징도안, 상징 이미지, 여백 등(이하 “도안 등”이라 한다)을 광고물에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도안 등은 통일·균형·균제·변화·반복·대칭·조화의 미 등을 고려하여 아름답게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한다.
3. 옥외광고물 등의 도안 등의 표시비율의 허용오차(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시)는 3% 이내로 한다.

③ 도안 등의 인정기준

1.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안, 도형, 이미지, 여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상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도안, 이미지 등은 당해 면적의 전부를 도안 등의 면적으로 인정하며, 업소주 인물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은 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에 한 한다.
3.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안 등이 조잡하거나 당해 건물이나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안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 등

1. 가로형 광고물 등에 있어서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2. 광고물 등은 설치·변경 또는 제거가 용이한 광고물 등을 권장하며, 제거시 설치 흔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권장한다.
3.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한다.

⑤ 광고물 등의 색채

1. 광고물 등의 색채는 당해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극적이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입체형 문자 또는 도안 이외의 표시는 원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3. 도안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지양하되, 원색계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광고물, 당해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파스텔톤의 색채, 광고물의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극적이지 않고 품격있는 광고물 등의 설치 또는 표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 등의 표시장소·위치

1. 법, 기타 관련 법령, 지구단위계획과 이 고시의 규정에 특별히 허용규정이 없는 한 도로경계 및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이하“건축선”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전면유리인 건축물에는 광고물의 게시 시설을 별도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광고물 등의 설치수량 : “업소당 광고물 수량 제한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총 수량은 업소별 1개소 이하(종합지주이용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 단, 곡각 지점은 2개로 한다.

⑧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조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4조(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①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1. 1층에는 입체형 또는 복합형(세로폭 50cm이내의 판에 입체형으로 표시)으로 하여야 하며, 2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단, 간판의 표시위치는 5층 까지 허용한다.
2. 간판의 표시면적은 가로폭은 업소의 폭이내, 세로폭은 윗층과 아래층간 벽면 폭의 80%범위내로 한다.
3. 건물의 최상단에는 건물명(회사명 포함)·건물을 상징하는 입체형 문자 또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4. 가로형 간판에 표시하는 문자 등의 면적은 광고물 표시면적(범위)의 40%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단, 디자인된 문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안 등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60%이내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②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건물의 출입구 좌우 양측에 각각 1㎡ 범위에서 건물명(건물상징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 등 또는 이미용 업소의 표지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이상을 이격하고, 업소당 표시면적의 합계는 한 면당 1㎡(단, 입체형 또는 복합형으로 할 경우에는 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4. 간판에 표시하는 문자 등의 면적은 광고물 표시면적의 50%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단, 디자인된 문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안 등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90%이내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④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료기관의 표시 도형

나. 종교시설의 표시 도형

다. 건물명(회사명)을 표시하는 입체형 문자 또는 도형

⑥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건축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의 부지외의 지역 또는 장소에 표시를 금지한다.
3.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10m 이내로 한다.
4. 개별 지주이용 광고물은 설치를 금지하고, 건물당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지주 이용간판만 허용한다.

⑦ 현수막의 표시방법

1.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위원회에서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통사고 목격자 또는 미아를 찾는 내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2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애드벌룬·벽보·전단의 표시방법

애드벌룬·벽보·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전단(1,000장의 범위내)의 경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당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청(또는 관리자)이 따로 표시를 허용하는 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에서 인정 받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⑩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1.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비율은 1층 이하는 20%이내, 2층은 10%이내, 3층은 10%이내로 한다. 단, 업소별 단위창문의 표시면적은 5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표시내용은 상징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업소당 표시면적의 총 합계는 3㎡ 이내로 하며, 3층까지의 표시를 허용한다.

제5조(국가 등의 광고물 등 제한)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표시면적이 20㎡를 초과하는 모든 광고물 등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 ① 법, 영, 조례,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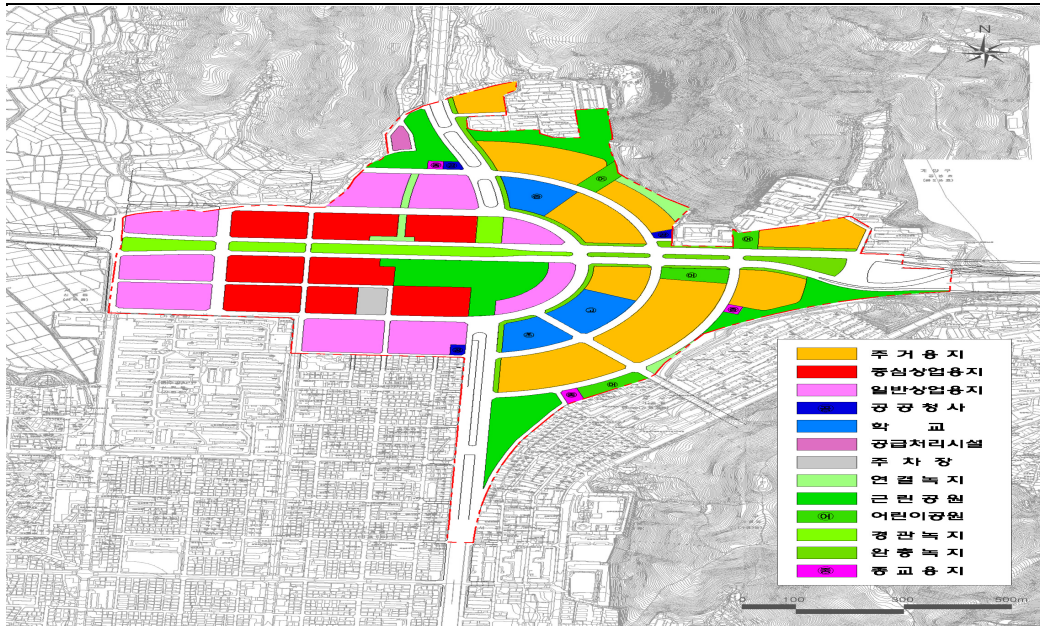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및 가정택지개발구역사업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과 광고물심의를 받은 광고물 등은 사업 시행일로부터 2년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의 광고물등은 당해 표시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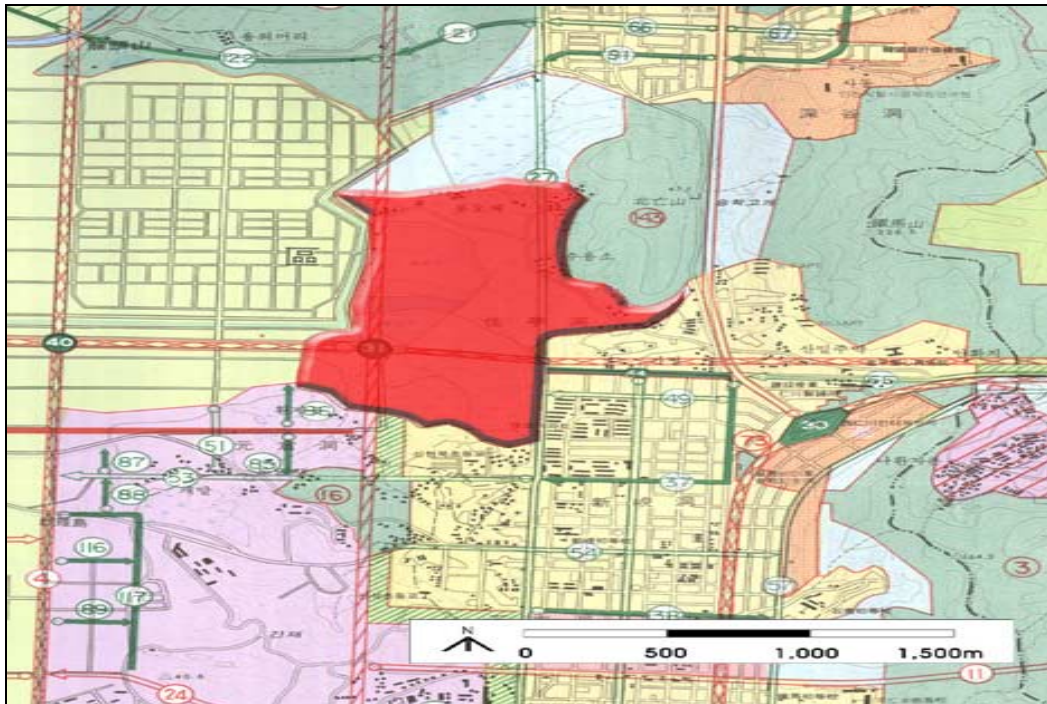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현황

○ 위치(2개소)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가정택지개발구역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위치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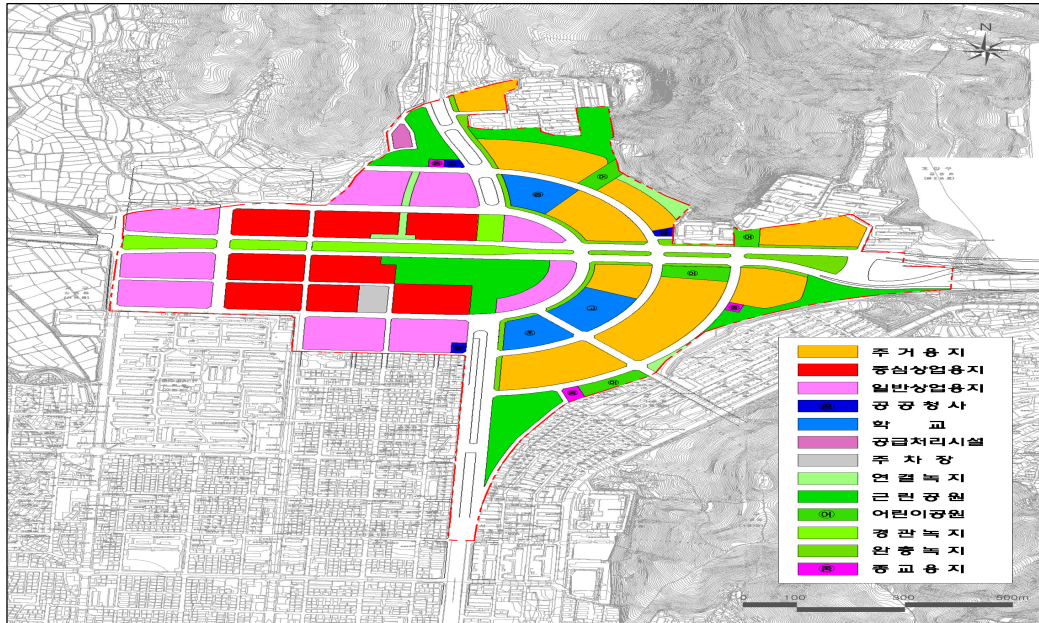
< 가정택지개발구역 위치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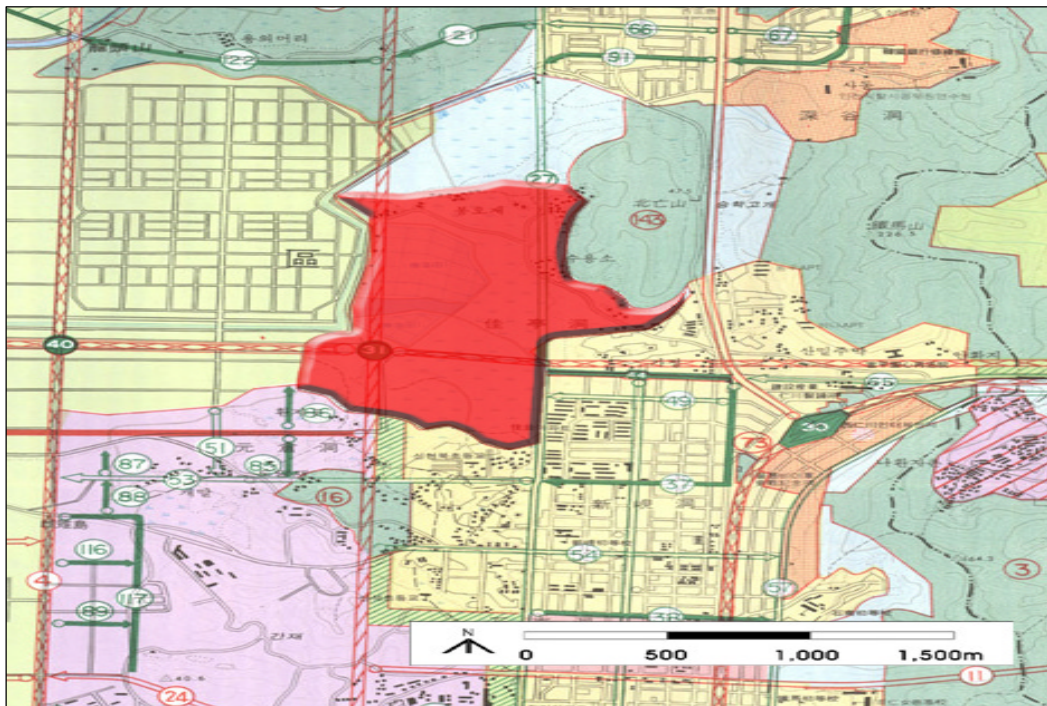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현황

○ 위치(2개소)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가정택지개발구역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위치도면 >



< 가정택지개발구역 위치도면 >



< 특정구역지정 현황사진 >

